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 제명변경: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 조문 내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나. 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

-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용’ 명칭을 ‘일반업무’로 변경

다. 전용차량 교체 또는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7조②, 안 제4조③)

-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라. 기타 운영상 개선사항

-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②)
-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12조③)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 개정령안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을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중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전용(專用) 및 업무용”을 “일반업무 및 전용(專用)”으로 하고,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을 “승합·화물·특수차량”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의 “특수업무용 승용”을 “특수한 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을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으로 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일반업무 승용차”로 한다.

제7조 제2항의 제1호 중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같은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용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조 제1항 중 “업무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차량”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및 제10조의2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공용차량</u> 관리 규정	<u>공무용차량</u>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u>공용차량</u> 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u>공용차량</u>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무용</u> <u>차량</u> 의 ----- ----- <u>공무용차량</u> 을 ----- -----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u>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u> · <u>승합용</u> · <u>화물용</u> 및 <u>특수용</u> 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 ----- <u>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u> · <u>승합</u> · <u>화물</u> · <u>특수차량</u> ----- ----- ----- -----.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u>특수업무용 승용</u>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u>특수한 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u>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최단운행연한</u> 을 경과하고 <u>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u> 전용 승용차를 행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u> 전용 승용차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

현행	개정안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u>업무용 승용차</u>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u>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 2. 3. (생략) <u><신설></u>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u>업무용 승용</u>	위에서 <u>일반업무 승용차</u>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u>전용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u>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 <u>일반업무 승용차</u>

현행	개정안
<u>차량</u>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업무용 승용차량</u>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u>공용차량</u>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u>공용차량</u>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u>공용차량</u>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② (생략) <u><신설></u>	<u>량</u>의 ----- <u>일반</u> <u>업무 승용차량</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공무</u> <u>용차량</u>의 -----.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 <u>공무용차량</u>의 ----- ----- <u>공 무 용 차 량</u> 을 ----- -----..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공용차량</u> 관리 규정 [별표]	<u>공무용차량</u> 관리 규정 [별표]

현행				개정안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 장관급 공무원 ○ 각 부의 차관 ○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 차관급 공무원 (차관회의 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용	일반업무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 행정기관	○ 최단운행연한: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승합, 화물, 특수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한 기준에 따른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각급 행정기관이 승용차량 중 일반업무 대형 차량으로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일반업무 차량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2245